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29 | March 2025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심판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예규]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 [예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예규]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 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예규] 2020. 11. 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특례제한법

10

- [심판례]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이 조특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한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14

-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예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상속세 및 증여법

15

- [판례]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국승)

국세기본법

17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승)

법인세법

[심판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4중3897, 2025. 2. 25.

[사안] 청구법인은 2017. 5. 19. 온라인·모바일게임 등의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분할법인”)로부터 쟁점게임(또는 “쟁점저작물”)에 관한 사업부(“쟁점사업부”)만을 적격물적분할(“이 건 물적분할”)하여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청구법인은 2024. 3. 29. 이 건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쟁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쟁점저작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2018~ 2022사업연도에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면서, 쟁점저작권의 시가를 ① 분할법인이 분할 당시 쟁점사업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쟁점감정평가액”) 또는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본 법은 “상증세법” 제59조 제5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쟁점보충적평가액”)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중 게임저작물이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905 판결 참조),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처분청이 저작권과 구별되는 권리로 제시한 상표권의 경우 쟁점게임과 별도로 존재하여 개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요소 중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이 발생하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게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이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게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상표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문제삼고 있는 영업권의 요소 중 게임 이용자 관련 정보, 게임 이용자 활동 데이터, 게임 운영과 업데이트 시 축적되는 데이터와 노하우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쟁점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게임 가동에 필요한 요소들로, 쟁점게임과 별도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게임의 명성이나 신용 등도 쟁점게임이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쟁점게임에 체화된 것일 뿐, 쟁점게임과 별개로 영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영업권적인 요소들이 쟁점게임의 가치 산정

[판단] 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만, 쟁점게임의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
_계속 인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제시한 영업수익 등의 예측치와 실제로 발생한 수치의 차이가 있고, 쟁점
게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을 청구법인이 평가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정보에 관
하여 평가자가 검증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는데, 해당 가액을 쟁점저작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게임에서 발생한 3개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
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쟁점저작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처분청은 쟁점저작권이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작권의 감가상
각 내용연수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잔존기간인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별표2] 및 [별표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와 관련된 내용연수범
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등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위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적용할 법인세법상 근거는 없음. 저작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무형자산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문 체계상 저작권은 법인세법 시행
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고(별표5는 건
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저작권과는 무관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비
고 1에서도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저작권의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코멘트]

- 상속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항에 따르면, 저작권 등의 평가는 저작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10%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해당 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의 2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한편,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2항에서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감가상각 기준을 변경하였음. ☞ 2019. 2. 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의 2호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예규]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서면-2023-법규국조-2960, 2025. 1. 12.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로서 위 배당금이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의 이익잉여금과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경우 내국법인이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코멘트]

-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수입배당금액”)의 95%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 제1호는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CFC)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효세율이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 포함)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라 규정함.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CFC과세 적용대상이나, 22년 현지에서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등 예외규정(국조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단서)을 적용받아 CFC과세 적용배제대상이었다가, 23년 다시 도매수입의 감소 등 CFC 적용배제 기준에 미달하여 CFC과세 적용대상이 됨.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24년 2월 실시한 배당)의 재원이 22년 이익잉여금과 23년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익금산입되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의 범위가 배당금 전액인지 배당금 중 특정외국법인이 CFC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예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997, 2025. 1. 2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하여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제18조의 4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는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22. 12. 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함.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23. 1. 1.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5%)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예규]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 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 1. 23.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코멘트]

-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의 2 호는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회사는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은 상장 회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법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동일 쟁점을 다룬 국세청 예규(서면-2023-법규법인-2348, 2025. 1. 22.)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2014년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특별결의)을 얻은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제19의 2호 개정 전 규정에서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에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한편, 2025. 2.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 2호 개정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조문에 추가하여 손금인정 범위를 명확화함.

[예규] 2020. 11. 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 3. 5.

우리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 “쟁점 예규”)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 예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 3. 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쟁점 예규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쟁점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코멘트]

- 기재부는 종전 예규(재산세제과-571)를 통해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해석하여 오다가 쟁점 예규(재산세제과-1024)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변경하면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
- 대상예규는 쟁점 예규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심판례]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이 조특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4서1962, 2025. 2. 6.

[사안]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2019. 5. 13. 충청북도 진천군에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시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쟁점규정”)의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투자가 완료된 202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2023. 6. 30. 쟁점시설의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변경하여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투자금은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쟁점시설(건물 및 구축물 부분)은 ‘보관과 저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쟁점규정에 따른 ‘창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판단] 처분청은 쟁점규정 괄호의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이 창고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 창고 내부의 기계설비등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등 건축물을 지칭할 때 ‘시설’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물류터미널 등을 ‘물류시설’의 구성항목으로 표현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서 ‘시설’이라는 표현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규정의 괄호가 단순히 기계설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해당 ‘창고시설’에는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화물의 ‘보관·저장’이 주된 기능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인 ‘창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보관·저장’의 의미는 물품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지 물품이 보관되는 기간의 상대적인 장단에 따라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쟁점시설의 경우 비록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물품이 일정 시간 동안 쟁점시설 내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에 ‘보관’ 기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규정(그 개정 당시에는 제8호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2004. 3. 6. 개정되면서 그 특례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단순한 보관·저장 기능만이 있는 창고만을 공제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관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인 쟁점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점(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874, 2024. 10. 8.)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은 쟁점규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코멘트]

- 조특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제1호는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조특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3항은 위 나목에 따른 자산의 하나로 제3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3항은 해당 자산의 하나로 제4호에서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규정함.
-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 유형별 ‘구분’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의 ‘창고시설 등’의 경우 그 적용범위의 하나로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를 규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의 창고시설의 경우 ‘가목’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를, ‘다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열거함.

[예규]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한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772, 2024. 11. 2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조특법 제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조특칙 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공제대상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자산이 국내에서 사용할 것을 공제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국세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법규법인-2010-222, 2010. 7. 23.). ¹³ 해당 예규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해당 예규의 근거로 (i)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정부의 국내 경기조절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ii)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을 들고 있음.

[예규]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서면-2024-법규법인-4008, 2025. 2.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안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21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경건설업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하여 세액감면(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 50%)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경우로, 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2024. 12. 31. 조특법 개정 시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이 종전규정(☞ 대상예규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임)의 경우 50%(청년·생계형 100%)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25%(청년·생계형 75%)로 인하됨.
- 2025. 2. 28. 조특령 개정 시 창업지역을 세분화하여 (i) 수도권 밖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0%), (ii)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5%), (ii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0%) 별로 감면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조특령 제5조 제25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던 감면배제 사유를 삭제하고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율이 낮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함.

부가가치세법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서면-2024-법규부가-3279, 2025. 2. 25.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질의법인이 결제대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할인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는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표시되어 청구됨.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질의법인과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각 질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5606 판결

[사안]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이 사건 각 증여”), 원고는 2019. 3.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공시기준일 2018. 1.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다른 호(“비교대상 아파트”)의 2017. 3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함.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유사 재산의 하나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코멘트]

- 1심은 구 상증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의 의미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의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실질적인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공시기준일인 1. 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고, 통상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년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거래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괄호규정의 의미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되어있는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원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2누35741 판결), 대상판결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국세기본법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사안] 원고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2013. 9. 17. 양도하였는데(“이 사건 양도”), 당시 총복 음성군 소재 주택(“이 사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 11. 3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원고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 5. 2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판단]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기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제3호 규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음. 다만 구 국기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각 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지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기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코멘트]

- 1심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나, 구 국기법의 규정(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 원심은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현저한 절차 지연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34786 판결).
- 대법판결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지방세법

[판례]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사안]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와 광양시에서 A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를 A사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이 사건 발전소”)를 운영하였음.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신고·납부한 후 해당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함.

[판단]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원고가 전력생산에 이용한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원고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부생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생가스 중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코멘트]

- 대법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37145 판결).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